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제재규정 정비〉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163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3.

(3) 회 부 일 : 2024. 12.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있음.

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이 때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정한 사용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대상자 명의의 자동차에 한정하여 발급하고 있어 장애인이 다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

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장애인 개인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 직접 발급하고, 이를 양도·대여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발급체계 및 제재와 관련한 내용을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생략)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u>사람이</u>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u>발급하여야</u> 한다.	② ----- ----- ----- <u>사람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필요한 사람이</u> ----- ----- ----- <u>신청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u> -----.
<신설>	③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④ ----- -----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생략)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1회 위반: 6개월

2. 2회 위반: 1년

3. 3회 위반: 2년

4. 4회 위반: 영구적 정지

⑤ -----
-----없는다

-----있는-----그
표지를 발급받은-----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

-----제5항-----

-----.

⑧ -----

-----제4항-----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과태료)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신 설>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④ (생략)

-----제6항-----

-----.

제27조(과태료) ①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
차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
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또는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비슷
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

<삭 제>

③ 제17조제5항-----

-----100만원-----
-----.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2. 사항별 검토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체계 개편(안 제17조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¹⁾에서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장애인주차표지”라 함)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발급대상 및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주차표지 발급대상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배우자, 직계혈족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임차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한 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 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아.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이처럼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장애인주차표지를 신청한 장애인 본인이 아니라 장애인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해 발급해왔기 때문에,

그간 자동차가 없는 장애인은 장애인주차표지를 원천적으로 발급받지 못하였으며, 여행이나 출장 시 렌터카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또는 활동지원사 또는 요양보호사를 통해 차량 이용을 지원받는 상황²⁾ 등에는 장애인주차표지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³⁾

□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주차표지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직접 발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소유 여부 또는 운전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련 연구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사람에 대해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 가능한 형태로는 장애인 복지카드⁴⁾에 장애인주

2) 이와 관련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임(복지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44호: 활동지원사에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02호: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에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3) 이슬기. (2022.7.4.).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사람 중심’ 바꾸자.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095>

4)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차표지를 추가하는 방안, 차량 탈부착용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하는 방안, 하이패스 카드에 장애인주차표지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있으며, 이중 차량 탈부착용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⁵⁾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주차표지를 장애인에게 직접 발급하게 되면,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건수가 현재 약 51만여 건 → 약 103만여 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바,

① 명확하고, 엄격한 발급 기준, ② 가족과 보호자 등의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 기준 등의 정립이 있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수 확대 조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수는 국토교통부 소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동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참고자료 1: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관련 법령).⁶⁾

참고로, 장애인 운전자는 최근 3년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기준,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운전자는 25.1%로 추정되며,

5)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사람중심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발급 개선 연구.

6)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10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 내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구분·설치해야 함.

2024년 기준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건수는 516,836건으로, 이는 전체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대비 171%에 달하는 수치임.

< 장애인 운전자 및 자동차 보유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등록 장애인	2,644,700	2,648,424	2,633,262
장애인 운전자 ¹⁾	632,258 (23.9%)	645,776 (24.4%)	660,743 (25.1%)
자동차 보유 장애인 ²⁾	1,329,557		

주1): 장애인 운전자는 본인용 주차가능(주차불가 포함) 표지 발급 건수를 토대로 한 추정치

주2): 자동차 보유 장애인은 18세 이상 기준,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자동차 보유 가구 비율(52.2%)을 적용한 추정치[18세 이상 장애인수(2,547,084명)(2023년도 12월 기준)× 자동차 보유 가구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및 주차표지 발급 현황 >

(단위: 면 /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302,205	302,205	302,205	302,205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건수	507,031	513,115	516,479	516,836
면수 대비 발급 건수	168%	170%	171%	171%

주1):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새움터)'의 자료를 기초로 '22년말 기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의 전체 주차면수 대비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면수 비율로 산정

주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98.4.11.) 이전에 건축한 대상시설은 미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주차표지 발급체계가 자동차 중심 → 사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개편되는바,

발급대상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현행 체계는 장애인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근본적인 연구 작업이 필요할 것임.

또한 종전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주차표지를 받은 기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해 보이므로,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하고,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2) 장애인주차표지 관련 제재규정 개편(안 제17조제3항, 제4항, 제27조)

□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장애인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의4] 및 제13조, [별표 3]에서는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재발급 제한기간 및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참고자료 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관련 조문).

□ 2021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상대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적은 불법주차 행위(장애인주차표지 미부착,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미탑승)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체 부과 건수의 약 97%로 나타났음을 고려하면, 현행법령에 따른 제재규정의 실효성은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보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기준)
과태료 부과(건)	370,350	403,368	443,389	311,083
부과금액	344억 9,800만원	400억 3,600만원	495억 3,700만원	362억 7,3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과태료 부과 유형(2023년) >

구분	불법주차 (과태료 상한액 20만원 이하)	주차 방해 (과태료 100만원 이하)	기타	계
과태료 부과(건)	429,143 (97%)	7,556 (1.7%)	6,690 (1.3%)	443,889
부과금액	371억 9,900만원 (75%)	25억 3,800만원 (5%)	98억 원 (20%)	495억 3,700만원

주1): 주차 방해 과태료: 50만원,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주2): 기타는 장애인주차표지 무단 사용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주차표지에 대한 제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강화·개편함.

< 개정안에 따른 주차표지 제재규정 개편 >

구분	양도·대여 및 위조·변조·유시명칭 사용	불법주차 (주차표지 미부착, 장애인 미탑승)	주차 방해 행위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 1년, 2년 간 재발금 제한	과태료 20만원 이하	과태료 100만원 이하
↓	↓	↓	↓
개정안	- 법률에서 직접 규정,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 1년, 2년 간 재발금 제한 및 영구적 정지 -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 200만원 이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편의시설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적인 주차행위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는 등 장애인주차표지 관련 제재규정을 강화·개편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장애인등편의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장애인등편의법」에서만 과태료 금액을 인상할 경우, 적용 법률에 따라 같은 행위에 대한 제

재처분의 수위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참고자료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련 조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안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 형식’을 이용한 두 법률의 정합성을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한편, 개정안에서는 ① 장애인주차표지의 양도·대여 및 위조·변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② 위반 시 재발급 제한 기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① 장애인주차표지의 양도·대여 및 위조·변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이미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

개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③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의료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또는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의료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②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7항⁷⁾에서는 장애인주차표지의 회수 또는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이미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⁸⁾(참고자료 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관련 조문) 등을 고려하면,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에 이미 정하고 있어 추가로 정하는 경우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주차표지를 장애인 개인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자동차에 대해 발급)에 비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므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포함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7)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중 해당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1호	6개월	1년	2년
다.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3호	6개월	1년	2년

나. 법무부

-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무단 사용 행위 등에 관한 제재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로서, 입법취지에 공감함.
- 다만, 개정안이 현행법 제17조제4항의 문구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에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로 수정하였으므로, 안 제27조제3항의 각 호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상당하므로 보완 검토 필요

개정안	법무부 수정안
제27조(과태료) ③ 제 17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u>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u>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u>붙어 있는</u> 자동차로서 <u>보행에 장애가 있는</u>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제27조(과태료) ③ 제 17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u>주차표지가 없는</u>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u>있는</u> 자동차로서 <u>그 표지를 발급받은</u>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이하 각호 생략)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3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

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 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 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 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 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 당 1대(시설면적/300㎡)

비 고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자료 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관련 조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회수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별표 2의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발급 제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재발급 제한 기간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날 또는 회수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그 처분 후의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1호	6개월	1년	2년
나.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2호	경고	6개월	1년
다.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3호	6개월	1년	2년
라.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4호	6개월	1년	2년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제1호	10만원
사.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제2호	10만원
아.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50만원

〈참고자료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련 조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
- ③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다. 교통행정기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이상
나. 법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33조제3항	10	
다. 법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2호	50	